

인천도시공사 정관

제정	2003.08.28	정관 제 1호	개정	2013.09.02	정관 제368호
개정	2004.10.01	정관 제 54호	개정	2014.01.28	정관 제382호
개정	2005.04.28	정관 제 88호	개정	2015.04.13	정관 제402호
개정	2005.07.29	정관 제 90호	개정	2016.02.15	정관 제428호
개정	2005.12.30	정관 제 97호	개정	2016.05.13	정관 제442호
개정	2006.05.30	정관 제122호	개정	2017.07.31	정관 제469호
개정	2006.12.26	정관 제127호	개정	2017.11.02	정관 제482호
개정	2007.10.23	정관 제150호	개정	2018.07.18	정관 제503호
개정	2008.02.14	정관 제161호	개정	2019.01.31	정관 제517호
개정	2008.02.22	정관 제163호	개정	2019.08.02	정관 제533호
개정	2008.09.19	정관 제177호	개정	2019.12.16	정관 제539호
개정	2009.02.19	정관 제190호	개정	2019.12.31	정관 제545호
개정	2009.04.17	정관 제192호	개정	2020.11.09	정관 제563호
개정	2009.09.08	정관 제218호	개정	2021.01.11	정관 제567호
개정	2010.03.12	정관 제226호	개정	2021.03.29	정관 제584호
개정	2010.10.25	정관 제250호	개정	2021.06.28	정관 제590호
개정	2010.12.06	정관 제257호	개정	2022.01.20	정관 제608호
개정	2011.07.01	정관 제276호	개정	2022.01.28	정관 제610호
개정	2011.12.28	정관 제287호	개정	2023.11.09	정관 제664호
개정	2013.01.21	정관 제353호	개정	2024.01.11	정관 제6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인천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2, 2011.12.28, 2016.2.15>

제2조(명칭) 공사의 명칭은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 Incheon Housing and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약호 IH)라 표기한다. <개정 2011.12.28, 2016.2.15, 2018.7.18, 2020.11.9>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소 또는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 <개정 2007.10.23, 2010.3.12, 2011.12.28>

제5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개정 2006.5.30, 2010.3.12>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 납입이 있는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2장 사업

제7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4.28, 2009.9.8, 2010.3.12, 2011.12.28, 2014.1.28, 2016.2.15., 2020.11.9, 2022.1.28, 2023.11.9>

1. 주택 등 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개량, 비축, 분양, 설계, 감리, 임대 및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향만재개발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
4. 관광·리조트 등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5. 공유수면 매립사업

6.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7.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8.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9.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 개발사업
 10.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11. 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2.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심 항공 운송수단 관련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13. 삭제
 14. 관광숙박업
 15. 삭제
 16. 삭제
 17.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 포함)·토지 또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9.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사업
 20.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
-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7조의 2의 규정의 따른다. <개정 2011.12.28>
- ③ 제1항제10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는 다른 법인에 출자 할 수 있는 한도는 자본금의 19.9% 이내로 한다. 다만, 법인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모로 선정한다. <신설 2009.9.8.>
-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9.>

제8조(사업계획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 이외의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① 공사에 사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0.3.12, 2021.6.28>

②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2, 2011.12.28, 2013.1.21, 2016.2.15, 2017.11.2, 2019.12.16>

1. 시의 업무관련 실·국장
2.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주택건설분야 전문가
3.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근로자이사에 한함)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10.3.12, 2013.1.21>

② 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0.3.12>

③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개정 2010.3.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신설 2019.12.16>

제11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12]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사장이 유고 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4.28>

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2>

제12조의2(상임이사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① 사장은 상임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에도 불구하고 해임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임기준

가. 상임이사의 임기 중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상임이사의 임기 중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 해임기준

가. 상임이사의 임기 중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하위 평

가를 받은 경우

나. 상임이사의 임기 중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및 하위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인천광역시 공사·공단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

제13조(하부조직) 공사의 조직 및 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10.4, 2005.4.28, 2005.7.29, 2005.12.30>

제14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12, 2017.11.2, 2019.12.16, 2023.11.9>

1. 삭제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7. 근로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공사 노동조합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

제16조(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7조(겸직제한)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8조(보수) ① 공사의 임직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그 밖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받는다.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2>

제19조(신분보장)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1조(대리인의 임명) 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원 중에서 공사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고문) ① 사장은 이사회 결의로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5.30>

③ 고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2006.5.30>

제4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2>

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0.23, 2010.3.12, 2011.12.28>

1. 공사의 사업계획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사채의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

8. 자금의 장·단기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9. 외국의 차관의 도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0. 30억원 이상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1. 자산 재 평가액의 확정

12.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결권의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 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소집 및 의장)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0.3.12, 2010.10.25>

②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신설 2010.3.12, 2010.10.25, 2014.1.28>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개

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제28조(서면의결) 이사회 의장은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의사항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29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12>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조직·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재심요청) 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4.1.28>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5조(결산)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종료 후 2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한 서류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0.3.12]

제3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
4. 이익배당(시 일반회계 납입) 적립
5.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38조(기금의 조성) 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사채 등

제39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발행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1.9>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 시기
3. 발행 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1.9>

제39조의2(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공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

제40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14.1.28>

제41조(자금의 차입)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② 자금의 일시차입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 예산서상의 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로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42조(선수금)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3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19>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부칙 <제1호, 2003.8.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임원의 임기) 공사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경과규정) ①공사의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연봉제시행규정, 일용직고용규정 및 금고지정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54호, 2004.10.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 2005.4.2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 2005.7.2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 2005.12.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 2006.5.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 2006.12.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 2007.10.2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 2008.2.1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 2008.2.2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 2008.9.1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 2009.2.1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 2009.4.1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 2009.9.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 2010.3.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호, 2010.10.2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 2010.1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 2011.7.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 2011.12.2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 2013.1.2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 2013.9.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 2014.1.2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 2015.4.1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 2016.2.1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 2016.5.13>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 2017.7.3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호, 2017.11.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 2018.7.1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 2019.1.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센터 별도 조직을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기간 동안 임시기구로 운영한다.

부칙 <제533호, 2019.8.2>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 2019.12.1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 2019.12.3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 2020.11.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 2021.1.1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 2021.3.29>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 2021.6.2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 2022.1.2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 2022.1.2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 2023.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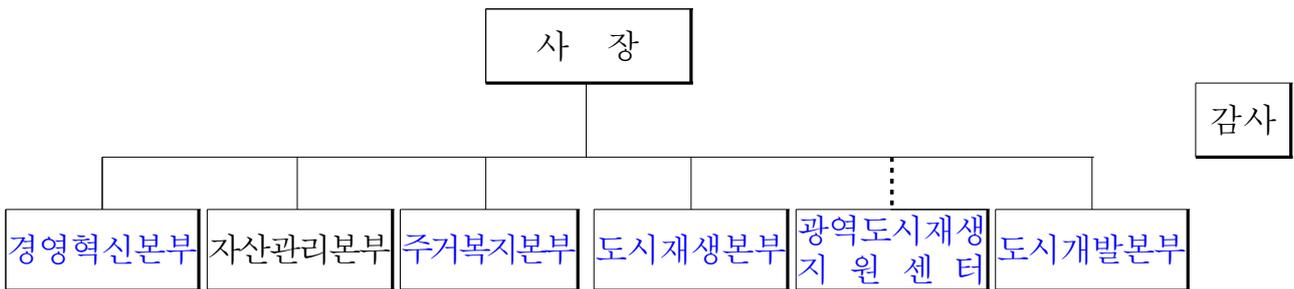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 2024.1.1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4.10.1, 2005.4.28, 2005.12.30, 2006.12.26, 2007.10.23, 2008.2.14, 2008.2.22, 2009.2.19, 2010.3.12, 2010.12.6, 2011.12.28, 2013.9.2, 2015.4.13, 2016.2.15, 2017.7.31, 2017.11.2, 2019.1.31, 2021.1.11, 2022.1.28, 2024.1.11>

기구표(제1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04.10.1, 2005.7.29, 2006.12.26, 2008.2.14, 2010.3.12, 2010.12.6, 2011.7.1, 2011.12.28, 2013.1.21, 2015.4.13, 2016.2.15, 2016.5.13, 2017.7.31, 2019.1.31, 2019.12.31, 2021.1.11., 2021.3.29, 2022.1.20, 2023.11.9>

정원표(제13조 관련)

구분	계	임원	관리직		사무직·기술직				운영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7급	1급	2급	3급	4급
임직원	391 (20)	4	3 (1)	20 (2)	50 (5)	98 (7)	100 (3)	103 (2)	2	4	5	2

- 비고: 1. 임원은 감사 포함 인원
 2. ()는 계약직(PM 포함)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